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사무 수탁기관 모집

사업제안요청서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1 사업개요

가. 위탁사무

- ① 청년활동 공간 제공 및 청년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청년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지원, 대방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② 청년문제 발굴 및 해결
 - 다양한 청년 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책 모색
 - 청년들의 역량 개발 사업 기획,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 지역 기반 청년활동 지원 사업
- ③ 무중력지대 대방동 시설 관리·운영
 - 무중력지대 대방동 시설물 관리
 - 사무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12.31.(2년 이내)

다. 인력구성(안) : 정규인력 6명(센터장 1명 포함)

라. 위탁사업비 : 498백만원(2018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예산항목	산출내용(안)	소요예산	비고
인건비	◦ 인건비 등(기본급 및 제수당)	257,000	
사업비	◦ 청년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 청년문제 발굴 및 해결 ◦ 지역연계·청년협력 활성화	90,000	세부사업내용은 참여기관 구체적 제시
운영비	◦ 임대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등	151,000	

* 2018년 예산심의, 위탁금 계약심사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수탁기관 공개모집

가. 응모자격(가, 나항 모두 충족)

-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만19세~39세) 대상 활동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실적'이 있거나, '사실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서울시 청년정책에 맞춰 시설 운영, 청년이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 소재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2개법인·단체 이내,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원의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나. 사업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7.12.13. ~ '17.12.22. <10일간>
- 접수기간 : '17.12.20. ~ 12.22. <3일간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및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장 신청사 3층
- 문 의 : 02) 2133-6586 / nno2236@seoul.go.kr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제안발표용 자료(PT파일 포함)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재무상태 증빙자료,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컨소시엄 응모 시), 기타 증빙자료(수행실적, 가산점 관련 등)
- 제출수량
 - 8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7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중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 : 좌철
 - 전자파일(USB) 또는 CD 1부

- 3 -

3 수탁기관 선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위원회 개최 : '18. 1. 3.(예정)/회의실 미정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심의 방법 및 기준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신청서 접수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전 실시)
 - 기 간 : '17.12.26. ~ 12.27.(2일간, 토·일요일 제외)
 - 조 사 자 : 청년공간지원팀장, 담당 주무관
 - 조사내용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심의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제안평가 :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기관 당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기관당 10분 이내) 후 최종 심의서 작성 및 의결
 - 제안설명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순번 추첨 순서에 의해 제안설명
-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점) : 경영상태(6), 사업수행실적(9), 수탁사무운영능력(6), 네트워크운영실적(9)
 - 정성적 평가(70점) : 시설관리 운영계획(10), 사업수행계획(30), 조직·인력계획(20), 예산편성 적정성(10)
 - * 청년공간 운영 경험, 청년 교류·커뮤니티사업 활성화 및 청년문제 발굴·해결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분야 배점 강화
- 평가방법
 - 참여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 4 -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0점 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구분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30)	30	27	24	21	18	0
	배점(20)	20	17	14	11	8	0
	배점(10)	10	8	6	4	2	0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기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 방식)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 2차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 협상 대상자로 결정

라. 심의결과 공개

- 市 홈페이지에 게재 : '18. 1. 5.(예정)

4. 협약체결

가.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 기관)로 선정 통보

나. 협약체결

-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5 -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 붙 임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2. 사무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정량적 평가 (30)	경영상태 ◦ 재정 부담능력 / 신용평가 등급서	6	담당 부서 평가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관련 커뮤니티 운영 등 청년 관련 사업수행실적	9	
	수탁사무 운영능력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신규채용 예정자 제외)	6	
	네트워크 운영실적 ◦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 관련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 -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9	
정성적 평가 (70)	시설관리 운영계획 ◦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계획 : 적절성, 효율성 등	10	심사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시설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적절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프로그램 충실도	30	
	조직·인력 계획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前 무중력지대 대방동 민간위탁 직인 고용승계 및 인력운영 방안 등 포함) ◦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유지 노력)	10	
	예산편성 적정성 ◦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 가격평가는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함

2. 정량적 평가 기준 :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미 첨부시 불인정)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제출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 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임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거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6.00
AA+, AA0, AA-	A1	AA+, AA0, AA-	5.60
A+	A2+	A+	5.20
A0	A20	A0	4.80
A-	A2-	A-	4.40
BBB+	A3+	BBB+	3.00
BBB0	A30	BBB0	2.60
BBB-	A3-	BBB-	2.20
BB+, BB0	B+	BB+, BB0	1.80
BB-이하	B0이하	BB- 이하	1.40
B+, B0, B-	B-	B+, B0, B-	1.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60

※ 참고사항

-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나. 사업수행실적 : 사업수행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수행별 증빙자료 2건 이상

○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 관련 사업수행 실적(누계) : 9점

평가항목	사업실적	점수	비고
실적금액(5점)	7억원 초과	5점	* 최근 3년내 6개월 이상 청년관련 사업수행 실적(누계)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5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점	
	3억원 이하	3.5점	
실적건수(4점)	10건 이상	4점	* 최근 3년내 6개월 이상 공간 운영실적
	7건~9건	3.5점	
	4건~6건	3점	
	1건~3건	2.5점	

다. 수탁사무 운영능력 : 경력사항 및 자격증 보유 증빙자료 제출

○ 총괄책임자의 경력사항 : 3점

유 사 업 무 경 력 사 황	점수	비고
3년 이상	3점	* 유사업무 : 청년공간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관련 사업 총사·참여
2년 이상 ~ 3년 미만	2점	
2년 미만	1점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증 보유 점수 : 3점

-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중인 자에 한하며,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관련 자격증	점수(1인당)	비고
정교사, 상담사, 지도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건축 및 회계 관련 자격증	1점	* 최대 3점 (중복합산 불가)

라. 네트워크 운영실적 : 네트워크 운영실적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수행별 증빙자료 2건 이상

○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 관련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누계) : 9점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건수)	점수	비고
40회 이상	9점	* 대상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연계활동 : 청년 관련 협력단체 또는 기관수
30 ~ 39회	8점	
20 ~ 29회	7점	
10 ~ 19회	6점	
9회 이하	5점	

*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네트워크 운영 실적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참여 지분율에 따라 평가

○ 가산점 부여표 : 정량적 평가 배점(30점) 한도 내에서 부여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소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소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정량적 평가 30점 만점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 가산점 평가 방법

-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출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 명

-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증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계약서를 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증가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계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사무 수탁 신청서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주요설립목적					
자본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기타(특이사항)					

※ 기타 항목은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

위와 같이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수탁기관 모집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표준안)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력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15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분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 16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17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사업 계획서

2017. 00. 00.

신청기관명

- 18 -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훈글 2007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50페이지 내외(첨부서류는 페이지에서 제외)

2. 작성요령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I. 사업개요	
II. 법인단체 또는 기관 현황 및 인력구성	
III. 유사사업수행실적 및 네트워크 운영실적(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IV. 사업추진전략	
V. 세부사업계획	
VI. 사업비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목 표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4.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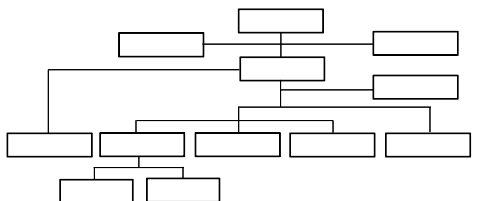
-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II. 법인단체 또는 기관 현황 및 인력구성

1. 현황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			직원수				
자본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혁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 직 도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부 서 명	인원(명)	비고
경영진			
부서별			

3.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4. 자산현황

- 고정자산 : 천원
-
- 유동자산 : 천원
-
- 부 채 : 천원
-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네트워크 운영실적(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작성요령>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 네트워크 운영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IV. 사업추진전략

1. 추진목표 및 비전

가. 추진목표 및 비전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을 제시

나. 추진 방법

2.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달성 전략

- 세부사업과제별 목표 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나. 구축운영방식

-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다.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 자체평가
- 사후관리

3. 인력배치 계획

가. 총괄 책임자

-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최종학력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F A X	
	직위		휴대전화	
	주소	(-)	E-mail	

(2) 관련사업 수행실적

연 도	사 업 명	발주기관명	비 고
~			
~			
~			
~			

나. 참여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진공 및 학위				담당 분야	경력 기간 (개월)	활동 내용	참여 기간	본사업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진공	학위					
1													
2													
3													
4													
5													

다. 前 무중력지대 대방동 민간위탁 직원 고용승계 및 인력운영 방안

V. 세부사업계획

1. 총괄 추진계획 및 일정

가. 총괄추진계획

나. 추진일정 (※ 총사업기간에 해당하여 작성)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가. 1차년도(2018년)

1) 추진계획

○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

2) 추진일정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내용												

나. 2차년도(2019년)

1) 추진계획

○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

2) 추진일정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내용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월별로 작성

Ⅵ. 사업비

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계			
세부사업명			
"			
"			
"			

2. 예산활용 계획

가. 1차년도(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액	비고
합계			
소계			
소계			
소계			

나. 1차년도(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액	비고
합계			
소계			
소계			
소계			

※ 예산의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계획별로 작성

2-1.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서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시대 도봉」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2018. 1. 1.-2019. 12. 31.

(단위 : 원)

[2018년]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① 인건비 ~ 노무비	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수당		
	상여금(연 400%)			
	퇴직충당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소계				
② 운영비 ~ 경비	여비(국내/국외)			
	교육훈련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유인물비			
	소모품비			
	수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감가상각비			
기타()				
소계				
합계 (①+②)				
③ 사업비(용역·물품구매·공사)				
위탁비총계				

[2019년]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① 인건비 ~ 노무비 ~ 보험료	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수당			
	상여금(연 400%)				
	퇴직충당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소계				
② 운영비 ~ 경비	여비(국내/국외)				
	교육훈련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유인물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감가상각비				
	기타()				
소계					
합계 (①+②)					
③ 사업비(용역·물품구매·공사)					
위탁비 총계					